

2026 꿈의 무용단 공주 단원 모집공고

함께 춤추며 세상과 소통하고 싶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꿈의 무용단 공주' 단원을 모집하니 춤의 세계에 관심이 있는 아동·청소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 3. 12.

(재)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1 모집 인원 및 지원자격

□ 모집인원: 35명 내외

※ 사회통합기능 수행을 위하여 사회취약계층을 50% 이상 우선 선발합니다.

□ 지원자격

- 공주시 관내 거주 또는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청소년(8~19세)
- 무용교육경험 및 무용실력(수준)과 관계없이, 몸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싶은 아동·청소년
- 성실하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며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아동·청소년
- 정기수업 및 현장체험, 공연 등 사업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 우선선발대상

- 사업 및 수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기존단원 지원시 우선 선발
- 사회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선발(해당자 6번 참조)

2

사업개요

- 사업명: 2026 꿈의 무용단 공주
- 사업내용: 춤을 통한 즐거움, 함께 춤추기를 통한 상호 존중과 이해, 춤을 통한 나와 세계의 연결
- 사업기간: 2026. 4. ~ 10. / 7개월간
- 교육장소: 국립공주대학교 무용학과 연습실, 공주문예회관 등
- 추진내용(안)
 - 정기교육
 - 기간: 2026. 4. 1.(수) ~ 10. 14.(수) / 주 1회, 총 33회차(119시수)
 - 위치: 국립공주대학교 무용실습동
 - 내용: 움직임 표현, 안무 창작, 실기 교육
 - 현장학습
 - 기간: 2026. 5. ~ 6. / 1회
 - 장소: 추후 계획
 - 내용: 현장체험 학습을 통해 문화예술 향유 경험과 무용에 대한 이해 심화
 - 공연관람
 - 기간: 2026. 6. ~ 10. / 연간 1~2회
 - 위치: 공주문예회관 대공연장 등 관내 공연장
 - 내용: 공연 관람을 통한 무용공연 이해, 공연관람예절 학습
 - 정기공연
 - 기간: 2026. 10. 11.(일) / 위치: 공주문예회관 대공연장
 - 내용: 단원들이 함께 만들어낸 작품을 선보이는 정기공연

※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은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지원내용

- 꿈의 무용단 교육과정 무상 지원(연습화, 무대의상, 간식 등)
- 무용 전공자로 구성된 교육강사가 무용 기초부터 실기교육
- 공동창작과정을 통한 결과를 선보이는 무대경험 제공(정기공연)
- 공주문화관광재단 기획공연 등 우수공연 관람기회 제공

4

모집일정 및 선발방법

□ 모집일정

공고 및 접수 3. 12.(목) ~ 3. 23.(월)	▶	서류심사 3. 24.(화)	▶	면접심사 3. 25.(수)	▶	합격자 발표 3. 27.(금)
-------------------------------------	---	-------------------	---	-------------------	---	---------------------

※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원방법

- 접수기간: 2026. 3. 12.(목) ~ 3. 23(월) / 12일간
 -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우선선발대상 증빙서류 (해당자만 제출)
 - 제출처: 공주문화관광재단 문예진흥팀(041-852-6042)
 - 제출방법: 이메일 접수(sh03123@gongjuclf.or.kr)
- ※ 1~3차년도(2023~2025) 참여 단원도 모두 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선발방법

□ 서류심사

- 심사일시: 2026. 3. 24.(화) 예정
- 심사내용: 제출서류를 기반으로 자격요건 등의 적격여부 판단

□ 면접심사

- 심사일시: 2026. 3. 25.(수) 17:00 예정
- 심사장소: 국립공주대학교 무용학과(35번건물) 1층 ※ 별도 안내문자 발송
- 심사내용: 아동의 교육 참여 의지와 관심도 심사

□ 합격자 발표

- 발표일시: 2026. 3. 27.(금) 예정
- 발표방법: 공주문화관광재단 누리집 게시 및 개별통지

6

제출서류

※ 1~3차년도(2023~2025년) 참여 단원도 지원서류를 제출하고 심사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 단원 지원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 우선선발 대상 해당자 증빙서류 1부(해당자만 제출)

※ 우선선발대상자 구분 및 구비서류

구분	비고	구비서류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 '수급권자'란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 (※ 증빙자료 행정복지센터/정부24 발급 가능)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또는 그 자녀 -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증빙자료 건강보험공단 발급 가능)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 (단위: 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1인가구</th> <th>2인가구</th> <th>3인가구</th> <th>4인가구</th> <th>5인가구</th> <th>6인가구</th> </tr> </thead> <tbody> <tr> <td>기준중위소득(50%)</td> <td>1,091,692</td> <td>1,818,152</td> <td>2,355,095</td> <td>3,247,369</td> <td>3,778,360</td> <td>4,277,976</td> </tr> </tbody> </table>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50%)	1,091,692	1,818,152	2,355,095	3,247,369	3,778,360	4,277,976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50%)	1,091,692	1,818,152	2,355,095	3,247,369	3,778,360	4,277,976										
조손 가정의 자녀	- 조부모와 만 18세 미만인 손자녀로 구성된 가정	가족관계증명서														
소년소녀 가장	- 18세 미만의 소년 소녀가 실질적인 생계의 책임을 지고 소년 소녀의 수입에 의해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는 세대	가족관계증명서														
다문화 가정의 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및 제14조의2에 따른 다문화가정의 자녀 - 결혼이민자(국적법에 따른 귀화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와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단, 결혼 이전에 외국 국적을 가진 친부(모)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 - 다문화가족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에도 그 구성원이었던 자녀에 대하여 지원 자격 인정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 '북한이탈주민'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한부모 가족 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이라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하며, 지원대상자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 정도를 고려하여 정함 ※ 일반 모자가족(모가 세대주) 또는 부자가족(부가 세대주)과는 구분 필요	한부모가족증명서														
도서벽지 거주자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의 거주자로서 도서·벽지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 - '도서벽지'란 지리적·경제적·문화적·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을 말하며, 산간지역/낙도/수북지구/접적지구/광산지구를 말함	재학증명서														
장애인의 자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자녀	장애인 증명서														

다자녀 가정의 자녀	「다자녀 가정(2자녀 이상)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보훈자의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2조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 교육지원대상자로 통보되거나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제출자 교육지원대상자 외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 교육지원대상자 외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제출자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 필요로 하는 사람 - 시각장애 / 청각장애 / 정신지체 / 지체장애 / 정서·행동장애 / 자폐성장애 (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 의사소통장애 / 학습장애 / 건강장애 / 발달지체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통지서																																																																
이동복지시설 자원자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 ‘아동복지시설’ 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신고를 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함	재원확인 증명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학교장 추천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학교장 또는 자치단체장이 판단·추천한 자 ※ 기관별 5명 이하까지 가능 - 부양의무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실업급여 수혜 가정 등) - 가계 파산 또는 재산 압류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질병·사고·장애 등으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거나,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자영업자로 폐업·휴업 등에 따른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학교장 추천서 및 객관적 증빙자료																																																																
자치단체장 추천자		자치단체장 추천서 및 객관적 증빙자료																																																																
인구감소지역 거주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9항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거주 대상자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부산(3)</td> <td>동구 서구 영도구</td> <td>대구(2)</td> <td>남구 서구</td> <td>인천(2)</td> <td>강화군 옹진군</td> <td>경기(2)</td> <td>가평군 연천군</td> </tr> <tr> <td>강원(12)</td> <td>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영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충북(6)</td> <td>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충남(9)</td> <td>공주시 금산군 보은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전북(10)</td> <td>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전남(16)</td> <td>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경북(16)</td> <td>고령군 구미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상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경남(11)</td> <td>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able>	부산(3)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2)	남구 서구	인천(2)	강화군 옹진군	경기(2)	가평군 연천군	강원(12)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영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6)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9)	공주시 금산군 보은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10)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16)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16)	고령군 구미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상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11)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주민등록등본
부산(3)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2)	남구 서구	인천(2)	강화군 옹진군	경기(2)	가평군 연천군																																																											
강원(12)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영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6)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9)	공주시 금산군 보은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10)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16)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16)	고령군 구미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상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11)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학교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제적증명서, 미진학사실확인서, 장원외교단 증명서, 검정고시 수험표																																																																

7

지원자 유의사항

- 지원신청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합격 후 또는 입단 후라도 합격을 취소합니다.
- 제출된 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증빙자료가 없는 사실 등은 인정하지 않으며, 불합격자에 대하여는 통지하지 않습니다.
- 본 공고문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공주문화관광재단 누리집(www.gongjucf.or.kr)에 공고합니다.
 - ※ 지원신청 관련 자료는 공주문화관광재단 누리집(www.gongjucf.or.kr) 첨부파일 확인 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문의 : 공주문화관광재단 ‘꿈의 무용단 공주’ 담당자(☎ 041-852-6042)